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4월 16일

석적읍장 인 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91-02-20	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8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4-10